

산업기술연구소 규정

□ 제정 : 1991. 08. 24

□ 개정 : 1995. 08. 28

□ 개정 : 1997. 03. 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연구소는 수원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(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직무) 본 연구소는 공학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산업개발과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
2. 자원개발과 활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
3. 간행물의 발간, 연구발표회 및 강습회
4. 기술용역 및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5조(소재지) 본 연구소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6조(조직) 본 연구소는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된 직무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.

1. 제1연구부 : 토목, 건축, 도시공학 분야에 관한 연구
2. 제2연구부 : 기계, 산업공학 분야에 관한 연구
3. 제3연구부 : 환경, 고분자, 생물, 화학공학 분야에 관한 연구
4. 제4연구부 : 전기, 전자재료, 정보통신, 전자공학 분야에 관한 연구
5. 연구관리실 : 공학 분야의 정기간행물, 도서 및 자료의 수집, 발간, 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

제7조(임원)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소장 : 1명
 2. 연구부장 : 4명
 3. 연구관리실장 : 1명
 4. 운영위원 : 약간명
- ②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기타 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소원) 이 연구소 연구소원의 구분, 자격, 임기, 보수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(운영위원회)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구성)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과대학장, 각 연구부장 및 연구관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
2. 규정의 개폐
3. 예산 및 결산
4.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재정 및 예산·결산

제13조(재정) ①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경비로 충당한다.

1. 교내·외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등의 연구보전비
2. 본교의 운영지원비
3.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

② 전항의 연구보전비 요율은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운영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사업계획) 이 연구소의 사업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15조(회계연도)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6조(예산·결산) 연구소장은 매년 예산·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연구비 등) ① 연구소 명의로 수령하는 모든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, 기타 수입금은 연구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예산내용에 따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전항의 경우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비 총 수령액에 대한 요율을(제13조 제2항) 연구소 운영을 위한 연구보전비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말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8조(해산 후 재산 귀속) 이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, 권리, 의무는 수원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5장 보 칙

제19조(운영세칙)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2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.
제21조(규정의 개폐 및 해산) 이 연구소 규정의 개폐 및 해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산업기술연구소 운영세칙

□ 제정 : 1995. 8. 28

제1장 구 분

제1조(구성원) 이 연구소는 연구원, 연구보조원 및 연구지원인력으로 나눈다.

제2장 자격 및 임명

제2조(연구원의 자격) 연구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.

제3조(연구보조원의 자격)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.

제4조(임명) ① 본교 전임교원인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소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보조원과 연구지원인력은 연구책임자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임명한다.

제3장 임 기

제5조(임기) 전임교원을 제외한 모든 연구소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
제4장 보 수

제6조(보수 등)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소원의 급여, 복리후생비는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소원의 임명과 동시에 임용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을 학교에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2회로 나누어 절반씩 선납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199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